

항목: 학생

발행: 2011-07-29

번호: **A-831**

제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페이지 1 의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8년 12월 9일자 규정 A-831을 대체한다.

본 규정서는 학교 차원의 또래 학생간 성폭력에 대한 고발,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한다.

변경 사항:

-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교내에서 절대 금지되고 있으며, 정규 일과시간 중은 물론 일과 전, 방과 후 및 교내에 머무는 모든 시간동안,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교육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학교 공동체의 건강, 안전, 풍기, 복지에 위협이 될 때 절대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p. 1)
-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수 있으며 신체적, 언어적인 방법 또는 글쓰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한 폭력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p.1, 섹션 1(B))
- 성폭력적 행동의 예에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적이거나 문란한 내용의 물건, 사진,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p. 1, 섹션 1(C))
- 당사자가 아닌 학생도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을 담당 교직원이나 기타 아무 교직원에게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 신고는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p.2, 섹션 II (B))
- 학부모 역시 또래간 성폭력 신고를 학교장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이메일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 이러한 신고는 반드시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p 2, 섹션 II (E))
- 성폭력 신고는 반드시 24시간 내에 OORS 에 입력되어야 한다. (p. 2, 섹션 III (A))
-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p 4, 섹션 V (C))
- 각 학교는 반드시 10월 31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학생간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접수할 담당 교직원(들)의 성명(들); 및 (2) 본 규정서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가 학생 및 교직원들과 논의되었다는 확인서. (p. 4, 섹션 VI)
- 개정된 성폭력 소책자(첨부 3)에서는 금지행동의 일례로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 본 규정의 지침에 따라 첨부 2에서는 교내 학생간 성폭력 금지조항이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특정 괴롭힘이나 폭력에까지 확장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